
‘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

2024. 3

- ❖ 법 개정 등으로 ‘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제도 안내
- ❖ ①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(‘24.1.1.시행) ②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(’ 24.3.12.시행) ③ 「산업안전 대진단」 안내

코트라 종합상담실 고용노동부 파견관 조선열 서기관

①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('24.1.1.시행)

□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를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

-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.

○ 현재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*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

***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<사업주 전액 부담>**

- 150명 미만 : 1만분의 25

- 150명 이상+우선지원 대상기업 : 1만분의 45

-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: 1만분의 65

- 1천명 이상 : 1만분의 85

-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,

-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

-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.

②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('24.3.12.시행)

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*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으며,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(위험성평가,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, 사업장 순회점검 등)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

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

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추가했다.

* (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관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

❷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

'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'25년까지 연장했다.

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

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.

❹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

산업안전기사·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·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.

* (안전보건조정자) 다수의 공종(건축, 토목, 전기 등)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

③ 「산업안전 대진단」 안내

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.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,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「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」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특히, 모든 50인 미만 기업(5~49인, 83.7만개소)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·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.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·목표, 인력·예산, 위험성평가, 근로자 참여,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·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·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.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, 전국 30개 권역에 '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센터'를 구성·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·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.



2024 산업안전 대진단

“안전보건관리체계”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!



산업안전 대진단, 무엇인가요?

-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(5~50인)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을 자가진단하고,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.



산업안전 대진단, 왜 해야 하나요?

- 「산업안전 대진단」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·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산업안전 대진단,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?

- (온라인) PC·모바일로 접속하며,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.

1단계

(PC)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
☞ <http://www.kosha.or.kr>
(모바일) 우측의 QR Code 스캔



2단계

누리집에 표출된 “산업안전 대진단” 팝업을
클릭 후, 절차에 따라 진행

QR Code



- (오프라인) 우편·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,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센터를 통해 상담·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(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 문의) ☎ 1544-1133



산업안전 대진단, 어떻게 진행 되나요?

대진단 실시

- 자가진단표 (10개 항목)
- 온·오프라인 진단



대진단 결과

-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
- 대진단 결과 확인



안전개선 노력

- 정부 지원 신청 (컨설팅/기술지도/재정지원 등)
- 자체개선



대진단 상담·지원

- 대진단 상담·지원 센터 운영
- 맞춤형 지원



산업안전 대진단,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- 첫째,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·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둘째, 상담·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셋째, 중대재해를 예방하고,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

작 성 자

■ 종합상담실 고용노동부 파견관 조선열

KOTRA자료 24-046

‘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

발 행 인		유 정 열
발 행 처		KOTRA
발 행 일		2024년 3월
주 소		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(06792)
전 화		02-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		www.kotra.or.kr
문 의 처		종합상담실 (02-3497-1734)
I S B N		979-11-402-0970-5 (95320)



Copyright © 2024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